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1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기현 · 임미애 · 한민수
김교홍 · 박홍근 · 이용우
윤건영 · 강득구 · 김재원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운영 및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u> <u>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u> <u>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추진협</u> <u>의체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u> <u>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u> <u>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u> <u>한다.</u>
③ (생 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u>구성 및</u> <u>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u>구성 ·</u> <u>운영 및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u> ----- -----.